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가단53009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3. 3. 27.

판결 선고2023. 4.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033,256원과 위 돈 중 182,838,876원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 8.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1. 8. 5. 접수 제41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즉,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만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셈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급과 보증사고의 발생 ○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17. 12. 12. 피고 주식회사 A(대표자: 피고 B, 이하 '피고 A'라 약칭)에게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A는 위 보증서에 따라 2017. 12. 13. E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갑 1 내지 3].

○ 피고 A는 2021. 7. 20.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갑 5]. 이에 따라, 원고가 대출기관인 E은행에 보증금액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 A 및 피고 B를 상대로 장차 구상권을 행사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이었다.

○ 원고는 실제로 2021. 11. 3. E은행에 183,076,0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갑 6].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약칭)의 종전 대표자였던 D은 2018. 3. 17.부터 2019. 7. 22.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억 100만 원을 빌려주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갑 10-2, 을 1].

○ 피고 B은 2019. 7. 22. D에게, 위 차용금을 2021. 6. 30.까지 갚겠다는 차용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을 1].

○ 피고 C는 D에게, 2021. 1. 26.부터 2021. 2. 1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빌려주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을 3].

○ D은 피고 B이 위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자, 이 법원 2021차전259284호로 위 대여금 3억 100만 원의 변제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7. 22.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을 1].

○ 위 지급명령은 2021. 8. 3. 피고 B에게 정당하게 송달되었다[을 1].

(3)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로 ○ 그러자 피고 B은 이틀 후인 2021. 8. 5.자로 D이 아닌,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거래가액은 5,550만 원으로 표기하였다[갑 11].

(4) 피고 B의 재산 및 채무 현황 (가) 적극재산: 2021. 8. 5.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전유부분: 19.58㎡)

②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G건물 H호(전유부분: 19.58㎡): 취득가액 1억 210만 원 (2014. 8. 18. 기준)

③ 제주 서귀포시 I 2층 J호(전유부분: 28.16㎡)

(나) 채무 현황: 같은 시기 채무 총액은 대략 9억 5,200만 원 상당

① 원고: 1억 8,400만 원 상당

- ② D: 3억 100만 원
- ③ K단체: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149만 원 [갑 11, 12]
- ④ L카드: 3,300만 원 상당 [갑 12]
- ⑤ M은행: 1억 2,670만 원 상당 [갑 12, 13]
- ⑥ E은행: 2,000만 원 상당1) [갑 12, 13]
- ⑦ N은행: 채권최고액 9,900만 원 [갑 13]
- ⑧ 신용정보조회 결과 채무: 합계 4,700만 원 상당 [갑 16]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로서 2021. 7. 20.자로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장차 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던 중, D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을 2021. 8. 3. 송달받게 되자, 그 이틀 후인 2021. 8. 5.자로 D이 관계된 피고 C 앞으로 자신의 적극재산 중 하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그 목적은 자신의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데 있었음이 틀림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 B의 적극재산이 전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명인 D을 위하여 그와 관련된 피고 C 앞으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것은 곧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이익을 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가 규율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그 '사해의사'(곧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의사)도 추정된다. 달리 판단할 여지 없다.

(2) 피고 C의 '선의'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 C(아래에서는 이 부분 항목에 한하여 단순히 '피고'라 칭한다)도 자인하고 있듯이[2021. 12. 24.자 답변서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피고가 주장하듯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채무 외에 다른 채무 현황이 드러나 있지는 않고, 피고 및 D과 B 사이에 신분관계나 특수관계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B은 D이 제기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자마자 그 이틀 만에 자신의 재산 중 하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D측에 별도의 정산 없이 오롯이 대물변제 형식으로 전체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를 표방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산처분은 부동산 거래시장 및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누구든지 당시 B이 급박하게 재산을 처분해야만 할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또한 B의 채권자인 D이 아니라 제3자인 피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적어도 D과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채권양도양수 및 그 통지절차 등을 모두 거쳤어야 함에도(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해야 하고, 이는 통상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민법 제450조 및 부칙 제3조 각 참조) 그러한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같이 처리되었을 뿐이다. D이나 피고로서는 당시 B이 급박하게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특정 채권자인 D측에 대한 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그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도 좀 더 면밀히 확인한 후에 B과 D, 피고 사이에 상호간의 채무채무관계의 정산 및 정상적인 채권양도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의 송달 직후에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B의 재산처분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순수한 마음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D과 피고는 B의 급박한 재산처분 상황에 직면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정상적인 재산이전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와 소요시간을 모두 생략한 채 재산처분 행위에 가담하여 급하게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의 '선의'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채권자로서 그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는 권리만을 행사·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결론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서영호

별지

1) 이는 피고 A가 아닌, 피고 B 개인이 E은행에 직접 부담하는 채무임이 명백하다.